[대한응급의학회] 2025년도 전공의 탄력정원제 운영안

1. 2025년도 응급의학회 전공의 탄력정원제에 의한 정원 양수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양수를 원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병원의 경우 학회를 통하여 탄력정원제를 신청한 후 학회에서 양도병원을 매칭하여 승인하게 되고, 비수도권 양수를 원하는 병원의 경우 양수를 원하는 초과지원병원은 학회를 거치지 않고 해당 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3. 대한응급의학회 2025년도 전공의 탄력정원제 운영은 아래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 **양도병원**: 미달된 정원 양도는 전국 어느 병원이나 가능함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상관없이 학회에 양도 신청)

나. **양수병원**: 정원의 양수는 복지부에서 탄력정원 가능으로 통보되었고 전공의 모집전형에서 지원자 수가 모집정원(정규정원 + 별도정원)을 초과한 병원만 가능, 양도되는 정원은 당해 연도(25년)에만 해당되는 정원임

다. **양도/양수병원**: 전체 양도된 정원과 양수가 필요한 수도권 초과지원병원 간 매칭은 2025년도 전공의 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된 후 **학회에서 양도/양수 신청을 일괄 취합하여 사전 원칙에 따라** 매칭함

**(학회 원칙상 개별 병원 간 양도/양수와 관련된 사전협의는 인정하지 않음)**

라. **비수도권 양수병원** 중 지원자가 초과되어 탄력정원제를 통하여 정원 양수가 필요한 경우, 학회에 별도 신청 없이 복지부에서 공지된 절차에 따라 개별 신청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개별 문의)

마. **정원 양수 가능 병원**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가 탄력정원제를 통하여 양수된 정원 포함한 정원의 N-2 이상인 경우

바. 25년 전공의 정원 양수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25년 전/후기 정원 양수 병원은 이미 배정된 병원 간주)

 1순위: 이전해(2024년 정원) 탄력정원제를 통하여 정원을 양도하였던 병원

 2순위: 2024년도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실태조사 점수가 높은 병원

 3순위: 2025년도 정규 전공의 1년차 기본정원의 수가 더 적은 병원

 4순위: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가 많은 병원(2024년도 수련실태조사 기반)

사. 전공의 정원 양도에 경쟁이 있는 경우, 학회에서 정한 정원 양도 신청기간(아래 참조)

 중 학회 공식 이메일로 **병원장 직인이 포함된 공문**이 수신된 시간의 순서(선착순)로 양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함.

**4. 전공의 정원관련 학회 규정 및 탄력정원제 양도, 양수 시 혜택 및 패널티**

 가.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정원 배정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수련위원회에서는 2년 연속 전공의 정원을 100% 채우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 전공의 정원 1개에 대한 영구적 회수를 이사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단, 탄력정원제에 의해 전공의 정원을 양도한 병원은 3년으로 기한을 연장한다.(2021년 이사회 통과)

나. 미달된 정원을 양도한 병원은 다음해 탄력정원제 전공의 정원 양수에 우선권을 부여함.

다. 전공의 정원을 양도한 병원은 다음해 탄력정원제 정원 양수에 우선권을 받지만, 동일 조건으로 경쟁 있을 경우, 우선권 있는 병원끼리 상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라. 전공의 정원을 양수받은 병원에서 해당년도에 양수받은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후 3년간 탄력정원제 정원을 양수받을 수 없음

**5. 대한응급의학회 2025년도 전공의 추가모집 탄력정원제 운영기간**

가. 병원별 탄력정원제 의한 정원 양도 및 양수 신청

 - 2024년 12월 9일 오전 9시 – 12월 10일 오후 1시까지 (기한 엄수)

나. 탄력정원제 매칭 결과 개별 병원 통보 및 서류 접수

 - 2024년 12월 10일 오후 2시 ~ 2024년 12월 11일 오전 10시

다. 학회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정원 조정 최종 신청

 - 2024년 12월 11일 오후 2시까지

**6. 2025년 전공의 정원 양도, 양수 희망의사 접수방법**

- 양도(전체) 및 양수(수도권 초과지원병원만) 의사 공식 접수는 학회 공식메일로만 가능: **office@emergency.or.kr**

- 정원 양도의 신청은 정원 양도 신청기간 안에 수신된 **해당 병원장의 직인이 포함된 공문**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6-가.에 명시된 양도 및 양수 신청 기한에 수신된 공문만 인정함)**

7. 문의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이사 김수진 010-4652-8162/ 수련간사 송주현 010-8726-4435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배상**